

세종 공정거래 소식지

June 11, 2021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 공정거래그룹에서는 앞으로 주요 공정거래 관련 규제 동향이나 뉴스를 정리하여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모쪼록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요 내용 요약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슈	주요내용
I. 보도자료	
<u>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u> 6. 3.	• (이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주요내용) 공정위는 개정 공정거래법(2021. 12. 30. 시행)을 위해 (i) 혁신성장 지원, (ii) 대기업집단 규제 개선, (iii) 법 집행 체계·절차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2021. 6. 4. 부터 2021. 7. 14. 까지 입법예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향후 별도 뉴스레터 발송 예정
<u>기업형 벤처캐피탈(CVC)·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 관련 업계 간담회 개최</u> 6. 4.	• (이슈)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주요내용) 공정위는 “벤처투자활성화를 위한 CVC 및 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과 관련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여 (i) 공정거래법령 주요 개정사항을 업계와 공유하고, (ii) 지주회사 및 벤처업계 관계자의 제도상 애로사항과 추가 제도개선 건의 등을 청취
II. 주요 소식	
공정위, 지급명령 활성화 등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실질적 피해구제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연구 용역 발주 5. 28.	• (이슈) 하도급법상 지급명령 관련 연구용역 발주 • (주요내용) 공정위는 지급명령 활성화 등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실질적 피해구제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

이슈	주요내용
공정위, SI 일감 개방 추진 5. 28.	• (이슈) 공정위 SI ‘일감 개방’ 추진 • (주요내용) 공정위는 기업집단국장 주재로 ‘정보기술(IT) 서비스 일감 개방 자율 준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여 대기업의 SI 일감 개방 자율 준수 기준 마련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 • SI 업종의 일감 나누기 자율준수 기준은 자율 참여가 원칙으로, 올해 안에 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임. 또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하여 내년 5월부터 대기업에 SI 계열사의 내부 거래 현황 공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힘
공정위, 최저가 보상제 운영 실태 파악 5. 29.	• (이슈) 최저가 보상제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실태 파악 • (주요내용) 최저가 보상제를 도입한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에 부당한 단가인하 요구 및 비용 떠넘기기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공정위에서 실태 파악 진행
공정위,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발주 6. 1.	• (이슈)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 관련 연구용역 발주 • (주요내용) 공정위는 외국인 총수 문제, 경영권 승계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
공정위와 한국규제학회의 학술대회 공동개최 6. 4.	• (이슈) 민간위탁 지정제도, 보증보험시장 규제 개선 • (주요내용) 공정위와 한국규제학회는 ‘경쟁제한적 규제개선의 과제와 방향’ 등의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i) 민간위탁 지정제도, (ii) 보증보험시장의 규제 개선 방향 등에 대한 입장 설명
III. 국회 발의법안	
<u>표시광고법 일부개정안(박성준 의원안) 국회제출</u> 5. 31.	• (이슈) 표시광고법 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5월 31일 국회 국방위 박성준 의원 표시광고법 일부개정안 발의
<u>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이학영 의원안) 국회제출</u> 6. 4.	• (이슈)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6월 4일 국회 산자위 이학영 의원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u>하도급법 일부개정안(전재수 의원안) 국회제출</u> 6. 4.	• (이슈) 하도급법 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6월 4일 국회 정무위 전재수 의원 하도급법 일부개정안 발의

공정거래 소식

I. 보도자료

1.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6. 3.)

- 공정위는 개정 공정거래법(2021. 12. 30. 시행)을 위해 (i) 혁신성장 지원, (ii) 대기업집단 규제 개선, (iii) 법 집행 체계·절차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2021. 6. 4. 부터 2021. 7. 14. 까지 입법 예고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개정안 주요 내용]

• 혁신성장 촉진 관련 개정사항

- 벤처지주회사 유용성 개선 (안 제26조 등)

- (개정 배경) 현행 벤처지주회사제도는 자산총액 기준 등에 관한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제도의 유용성을 제약하는 측면 존재
- (개정 내용) (i) 벤처지주회사로 인정받는 자산총액 기준을 현행 5천억원에서 3백억원으로 축소, (ii)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벤처기업 외에 R&D 규모가 연간 매출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도 포함, (iii)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로의 계열편입 유예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 (iv) 총수일가가 자·손자·중손회사 지분을 보유한 경우 벤처지주회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자료 제출의무 부과

*벤처지주회사는 자회사 주식가액 중 벤처자회사 주식가액의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함

**벤처기업 및 R&D 규모가 매출액의 5%이상인 중소기업

- CVC 제도 시행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29조, 제5조 제2항 제5호 다목)

- (개정 근거) 개정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기업형벤처캐피탈(CVC)*이 조성한 펀드에 투입되는 외부자금의 상한을 40%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 (개정 내용) (i) 외부자금의 상한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고 수준인 40%로 설정, (ii)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CVC가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계열편입 유예기간도 10년으로 확대

- PEF 전업집단의 대기업집단 지정제외 규정 신설 (안 제36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

- (개정 배경) 현행 시행령은 금융·보험업만 영위하는 기업집단(금융전업집단) 등을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PEF전업집단*은 경제력 집중 우려가 크지 않음**에도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음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 Private Equity Fund) 관련 회사와 피투자회사로만 구성된 기업집단

**PEF는 투자대상기업의 가치를 높인 후 되팔아(buy-out) 수익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므로 기업 지배가 일시적임

- (개정 내용) 시행령 개정안은 (i) PEF전업집단과 (ii)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와 PEF 관련 회사만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을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되도록 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 구체화 (안 제21조 제8항 및 제9항)

- **(개정 근거)** 개정 공정거래법은 거래금액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피취득회사가 국내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는 경우의 기업결합을 신고하도록 하면서, 그 구체적인 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 **(개정 내용)** 시행령 개정안은 거래금액이 '6천억원 이상'이면서, 국내시장에서 '월간 100만명 이상에게 상품·용역을 판매·제공'하거나 '국내 연구개발 관련 예산이 연간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업결합 신고를 하도록 규정

- 정보교환담합 금지규정 적용대상 정보 구체화 (안 제43조)

- **(개정 근거)** 개정 공정거래법은 가격, 생산량 등의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정보교환담합 적용대상 정보를 시행령에서 추가로 정하도록 위임
- **(개정 내용)** 시행령 개정안은 정보교환담합 금지규정 적용대상 정보를 (i) 상품·용역 원가, (ii) 출고량·재고량·판매량, (iii) 상품·용역 거래조건 또는 대금·대가 지급조건으로 규정*
*정보교환 합의 외에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범위반에 해당하며, 구체적 범위반 판단기준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관련 연구용역 진행 중)

- 자진신고 감면 취소사유 구체화 (안 제54조 제1항)

- **(개정 근거)** 개정 공정거래법은 자진신고로 제재조치 감면 등 혜택을 받은 자가 재판에서 조사과정과 달리 진술하는 경우 등에는 감면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취소사유를 시행령에 위임
- **(개정 내용)** 시행령 개정안은 감면 취소사유를 (i) 중요 진술·제출자료를 재판 과정에서 부정하는 경우, (ii)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iii) 법정 불출석 등 정당한 이유없이 재판에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는 경우, (iv) 자진신고한 공동행위 사실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로 규정

• 기업집단법제 개선 관련 개정사항

- 임원독립경영* 출자요건 완화 (안 제5조 제1항 제3호 다목)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임원이 별도로 지배하는 회사가 임원겸임·출자·채무보증 등의 측면에서 해당 대기업집단과 무관한 경우 그 대기업집단에서 제외하는 제도

- **(개정 배경)** 현행 임원독립경영제도는 임원측 계열회사와 동일인측 계열회사간 출자를 금지하는 등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대기업집단이 전문적 경험과 역량을 갖춘 기업인을 활용하는데 한계 존재
- **(개정 내용)** 특정인이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선임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동일인측 계열회사 지분을 3%(비상장사는 15%) 미만까지 허용

- 친족독립경영*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안 제5조 제6항, 제6조 제3항)

*동일인의 친족(독립경영자)이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회사를 해당 대기업집단에서 제외하고 해당 친족을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하는 제도

- **(개정 배경)** 현행 시행령은 부당 내부거래 방지 등을 위해 친족측 계열회사에 대해 그 분리가 결정된 시점부터 3년간 동일인측 회사와의 거래현황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토록 규정
- **(개정 내용)** (i) 친족측 분리가 결정된 이후 3년 이내에 새롭게 지배력을 확보한 회사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 (ii) 독립경영결정의 취소되거나 청산 등으로 친족측이 지배하는 회사가 없게 되는 경우로서, 분리된 친족이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되어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사익편취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 분리되었던 친족을 당초와 같이 동일인의 친족으로 복원하도록 함으로써,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

[개정안 주요 내용]

- 공시제도 합리화 및 관련규정 신설 (안 제32조 제1항, 제33조 제3항 내지 제6항, 제31조 제2항 및 제34조)
 - (내용) 국외 계열회사 현황에 대한 공시기준 구체화, 공익법인 이사회 의결·공시대상 구체화, 소규모 비상장회사 공시부담 완화
 - (개정 근거) (i) 개정 공정거래법은 동일인에 대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계열회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외 계열회사 등의 현황 정보에 관한 공시의무를 부과하면서, 공시내용, 간접출자 범위, 공시의무 면제사유를 시행령에 위임, (ii)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대해 대규모 상품·용역 내부거래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의무화하면서, 대상이 되는 거래금액 기준과 거래상대방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
 - (개정 내용) (i) 국외 계열회사 현황에 대해서 일반현황, 주주현황, 계열회사 출자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간접출자회사도 공시대상에 포함시키되, 동일인의 의식불명 등 면제사유를 규정, (ii) 공익법인 내부거래시 이사회 의결·공시의 대상이 되는 거래금액은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로, 거래상대방은 '총수입가가 20% 이상 회사(상법상 자회사 포함)'로 규정, (iii) 총수입가 지분율이 20% 미만인 자선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소규모 비상장사에 대해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의무를 면제
- 법 집행체계·절차 관련 개정사항
 - 서면실태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안 제99조 제1항 제4호 별표 10)
 - (개정 배경) 개정 공정거래법은 서면실태조사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자료 제출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 (개정 내용) 서면실태조사 관련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자료 제출시 사업자 등에 대해 최대 1억원, 임원 등에 대해 최대 1천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그 금액을 차등화*하여 규정
 *사업자 범위반시 (1차) 2천만원, (2차) 5천만원, (3차이상) 1억원 부과, 임원 범위반시 (1차) 2백만원, (2차) 5백만원, (3차이상) 1천만원 부과
 - 진술조서 기재사항 규정 (안 제75조 제2항)
 - (개정 근거) 개정 공정거래법은 당사자 진술 청구 시 진술조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 (개정 내용) 진술조서에 진술자의 성명·주소, 진술일시·장소·내용을 기재하도록 규정

2.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 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 관련 업계 간담회 개최 (6. 4.)

- 공정위는 벤처투자활성화를 위한 지주회사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대·중견 지주회사 관계자 및 벤처업계 관계자를 초청하여 업계 간담회를 개최
- 간담회에 공정위 기업집단국장과 지주회사과장이 참석하여 CVC 및 벤처지주회사 제도 등과 관련한 공정거래법령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하고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
-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였고, 공정거래법 시행령도 이러한 취지에 따라 개정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설명
 -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2021. 12. 30. 시행)을 통해 (i) 그간 금지되어 온 일반지주회사의 CVC 설립·보유를 허용함과 동시에 그에 따른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ii) 벤처지주회사의 자유로운 투자 촉진을 위해 각종 행위규제를 완화**하였음

- *CVC는 지주회사가 지분 100% 보유 자회사로 설립하되, CVC 차입 규모를 제한(자기자본의 200%)하고, 투자 행위 외에 타 금융업 영위를 금지
-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을 폐지하고, 벤처지주회사를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로 설립하는 경우 벤처지주회사가 보유해야 하는 (손)자회사 지분율 완화 등
- 시행령 개정을 통해 (i) CVC와 벤처지주회사가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의 계열편입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ii) 벤처지주회사 자산요건을 완화할 계획
-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개정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영상 애로사항 및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관심과 추가 제도개선 건의 등에 관해 의견을 제시

II. 주요 소식

1. 공정위, '지급명령 활성화 등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실질적 피해구제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연구' 용역 발주 (5. 28.)

- 공정위는 지급명령 활성화 등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실질적 피해구제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
 - **[하도급법상 지급명령]** 공정위가 법 위반 원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손해배상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수급사업자가 미지급 하도급 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정조치
 - 다만 대법원은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부당감액분을 계산하기 위해 공정위가 제시한 기준 금액이 정당한 하도급대금이라고 볼만한 근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서 공정위의 지급명령을 취소하였고(대법원 2012두 15555 판결), 구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나 제5호** 위반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각 품목이나 거래별로 개별적 사정이 있을 수 있어 위반행위 전의 단가가 당연히 지급명령액 산정의 기준액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제1호나 제5호 위반행위의 성질상 이러한 위반행위가 없었더라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실제 정하였을 대금액을 상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제1호 또는 제5호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대법원 2016두59430 판결)하여, 지급명령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공정위는 이번 연구를 통하여 (i)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ii) 수급사업자의 피해 구제를 위한 추가적인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밝힘

2. 공정위, SI ‘일감 개방’ 추진 (5. 28.)

- 공정위는 ‘정보기술(IT) 서비스 일감 개방 자율 준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여, 대기업의 SI 일감 개방 자율 준수 기준 마련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
 - IT업계는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사 계열사에 일감을 맡기는 게 효율적이므로 SI 일감은 외부에 개방하기 어렵다고 주장
 - 공정위는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지킬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자율 참여가 원칙이라고 설명. 또한 올해 안에 SI 업종의 일감 나누기 자율준수 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하여 내년 5월부터 대기업에 SI 계열사의 내부 거래 현황 공시를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힘

3. 공정위, 최저가 보상제 운영 실태 파악 (5. 29.)

- 최근 다수의 유통업체들이 최저가격이 아니면 차액을 보상해주겠다고 하는 최저가 보상제를 도입함에 따라,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에 단가 인하를 압박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공정위 관계자는, 납품된 상품 가격을 다시 감액한 행위, 서버비, 광고비 등 새로운 형태 비용 계정을 만든 다음에 부당하게 납품업체한테 전가한 행위 등은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실태 파악 중이라고 밝힘
- 공정위의 주요 감시 대상은 부당한 단가인하 요구와 비용 떠넘기기 등으로, 유통업계의 최저가 보상제 운영과 관련하여 부당한 거래가 의심되면 즉시 직권조사에 나서는 등 강하게 제재한다는 방침

4. 공정위,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발주 (6. 1.)

- 공정위는 최근 외국인 총수 문제, 경영권 승계 문제 등이 발생함에 따라 1987년 도입된 동일인 지정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
 - 공정위는 금번 연구용역을 통해 기업집단별 총수 지정 사례 및 현행 총수 관련자 범위의 적정성·타당성을 분석하고, 특히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5. 공정위와 한국규제학회의 학술대회 공동개최 (6. 4.)

- 공정위와 한국규제학회는 ‘경쟁제한적 규제개선의 과제와 방향’ 등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i) 민간위탁 지정제도의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 (ii) 보증보험시장 개방 등에 대하여 논의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장 주요 발언 내용]

• 민간위탁 지정제도 관련

- **(규제개선 배경)** 민간위탁 지정제도의 취지는 다양한 민간기관들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공공기관이 운영을 독점하거나 위임규정을 통하여 특정한 기관에 맡기는 경우가 많음
- **(규제개선 방향)**
 - 승강기 정기검사제도: 승강기 검사 기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검사 기관을 추가 지정하고,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
 - 각종 교육제도: 최근 전기안전, 기계설비유지관리 등의 교육을 의무화한 법령이 신설되면서 교육기관을 특정하여 지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교육을 받는 수요자에게 선택권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민간 기관의 진입장벽을 완화할 계획. 특히 국토부의 건설기술인교육제도를 모델로 정기적인 심사를 통해 부실기관을 퇴출하고 신규 참여를 위한 진입장벽을 완화할 예정

• 보증보험시장 관련

- **(규제개선 배경)** 과거 보증보험시장에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신규 허가를 제한한 결과 현재까지 독과점 구조가 유지되고 있음
- **(규제개선 방향)** 신원보증, 할부신용보증, 전세금 반환보증, 임대보증금 보험 등 모두 독과점 구조임. 따라서 진입장벽을 낮추어 민간 손해보험회사에게 보증보험 시장을 개방하고, 상품 및 서비스를 다양하게 개발할 예정

III. 국회 발의법안

1. 표시광고법 일부개정안(박성준 의원안) 국회제출 (5. 31.)

- 5월 31일 국회 국방위 소속 박성준 의원은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안 제3조 제2항 등)을 개정, 신설하는 내용의 표시광고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2.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이학영 의원안) 국회제출 (6. 4.)

- 6월 4일 국회 산자위 소속 이학영 의원은 (i)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를 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안 제12조의6), (ii)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기한을 삭제하며(안 제13조 제2항), (iii)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려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4조의2), (iv)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의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협의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며(안 제14조의3제2항), (v)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또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등 법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안 제37조의2제2항), (vi) 가맹본부가 해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부당하게 가맹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안 제41조제1항)을 개정 및 신설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3.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전재수 의원안) 국회제출 (6. 4.)

- 6월 4일 국회 정무위 소속 전재수 의원은 (i)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자재비·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도록 하고(안 제3조 제10항), (ii) 하도급대금의 증액사유로 수급사업자의 추가작업을 명시하며(안 제3조 제11항), (iii) 원사업자가 추후 계약을 조건으로 감액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시기·내용 및 하도급대금에 관한 대강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도록 하고(안 제4조 제3항), (iv) 합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액한 하도급대금과 그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안 제13조 제11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